

문서번호	사회복지과-111998
결재일자	2015. 12. 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
김진호	이재은	최종현	12/08 고재식
협 조			

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



복 지 환 경 국
(사 회 복 지 과)

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

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회계 및 시설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으로 문제점을 파악, 개선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, 동절기 대비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보고임

I 추진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(지도·감독 등) 및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 등)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
-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, 제24조
- 2015.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(보건복지부)

II 점검개요

- 점검기간 : 2015. 11. 17 ~ 12. 3.
- 점검대상 및 일정 : 총 19개소 (법인 2개 / 장애인복지시설 17개)

법인 및 시설명	시설유형	소재지	점검일자
군자작은예수의집	단기거주시설	능동로21길 14-7	11.17(화)
능동작은예수의집	공동생활가정	천호대로110길 71-6	
구의작은예수의집	"	자양로23나길 7-8	11.18(수)
광진구수화통역센터	수화통역센터	긴고랑로 72	
중곡작은예수의집	공동생활가정	긴고랑로23길 5	
희망의학교	주간보호시설	천호대로 622	11.19(목)
희망일터	직업재활시설	천호대로 622	
하나인주간보호센터	주간보호시설	능동로59길 14	11.23(월)
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	직업재활시설	동일로80길 20	
희망하우스	주간보호시설	능동로34길 102-5	
정립주간보호센터	"	워커힐로 93	11.30(월)
정립보호작업장	직업재활시설	워커힐로 93	
정립회관	장애인복지관	워커힐로 93	12. 1(화)
한국소아마비협회	사회복지법인	구의2동 16-3	12. 3(목)
월하복지재단		구의2동 30-25	
아이맘인지발달연구소	재활치료시설	동일로 357	11.27(금)
sim발달지원센터		천호대로136길 50	
동그라미 움직임 발달센터		자양로 135, 201호	
정립전자	직업재활시설	워커힐로 93	11. 24.~26.

□ 점검범위 : 2015. 1월 ~ 11월 / 회계 · 운영실태 전반 및 안전점검

□ 합동점검반 편성 : 4명

부 서	직 급	성 명	점 검 업 무
사회복지과	장애인복지팀장	이 재 은	점검 총괄
	행정6급	김 진 호	시설 예산회계·운영 전반
	행정7급	조 기 래	"
	임기9급	이 창 호	시설 안전점검 전반

□ 점검방법 : 공부서류 확인 및 현장 안전점검 등

III 주요 점검내용

□ 사회복지법인 점검사항

-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의 적정성
- 정관, 임원, 이사회 운영에 관한사항
- 목적사업 수행여부, 기본재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사항

-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(보조금카드사용) 및 예산회계
- 기부 후원금품 및 물품관리 전반
- 직원 임면사항 및 종사자 인건비 등 보수지급 관계
-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

□ 동절기 안전점검사항

- 화재 책임보험 가입여부
- 소방·전기·가스분야 안전관리

IV 점 검 결 과

□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

계	세입예산 부 적 정	운영규정 미 제 정	시설 운영위원회			성범죄조회 미 이 행	책임보험 미 가 입
			미구성	위원 임의위촉	회의 미실시		
16	2	1	2	4	4	2	1

○ 모든 시설 공통 지적사항

- 전년도 세입·세출 결산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에 미제출
-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정기 안전점검결과 구에 미제출

□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

계	구조물 손상 및 균열	소방시설 관련	책임보험 미가입	비 고
4	2	1	1	'16년 기능보강

□ 사회복지법인 지적 및 처분사항

법인명	지 적 사 항	조치요구사항	처분
한국소아 마비협회	- 정립회관 수영장 이용료 수입을 법인 및 시설에서 각각 세입처리 장애인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인 정립회관 수영장 이용료 수입을 법인 및 시설에서 각각 세입처리	- 법인 및 시설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영 (2016년 부터)	시정

□ 장애인복지시설 지적 및 처분사항

시설명	지 적 사 항	조치요구사항	처분
정립회관	- 수영장 이용료 수입을 법인 및 시설에서 각각 세입처리 장애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이용료 수입을 법인 및 시설에서 각각 세입처리	- 시설 및 법인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영 (2016년도 부터)	시정
정립전자	- 시설장 등 개인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중 시설장 및 마케팅본부장의 타사제품을 정립전자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횡령한 건으로 검찰 수사중	- 향후,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처분 예정	미정
광진장애인 보호작업장	-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조희 미이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3항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여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	- 종사자(신유리)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(2015년 12월)	시정
정립주간 보호센터	- 운영규정, 사업계획, 운영위원회 정립회관 규정 등을 준용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별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립회관의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음	- 시설의 운영규정,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 (2016년 부터)	시정
희망하우스	-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조희 미이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3항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여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	- 현재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(2015년 12월)	시정
	-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임의 위촉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에서 임의로 위촉하여 운영	- 구청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 (2015년 12월)	

시설명	지 적 사 항	조치요구사항	처분
군자작은 예수의집	-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임의 위촉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에서 임의로 위촉하여 운영	- 구청에 운영위원회 위원(황도연) 위촉을 요청 (2015년 12월)	시정
구의작은 예수의집	-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임의 위촉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에서 임의로 위촉하여 운영	- 구청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 (2015년 12월)	시정
중곡작은 예수의집	-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과 화재 외의 손해배상책임보험 2가지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	-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(2015년 12월)	시정
광진구 수화통역센터	- 시설 운영위원회 미구성 및 미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 미구성 및 미운영	-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(2016년 부터)	시정
아이맘인지 발달연구소	- 시설 운영위원회 2분기 정기회의 미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2분기 정기회의 미실시	- 운영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 (2016년 부터)	시정
동그라미 움직임 발달센터	-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임의위촉 및 미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, 위원을 임의위촉하고 분기별 정기회의 미실시	- 구청에 운영위원 위촉 요청 및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(2016년 부터)	시정
sim 발달 지원센터	- 시설 운영위원회 미구성 및 미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 미구성 및 미운영	-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(2016년 부터)	시정

□ 장애인복지시설 공통 지적사항

시설명	지 적 사 항	조치요구사항	처분
모든 시설	- 세입·세출 결산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7월에 지연 제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를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7월에 지연 제출	- 2015년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는 2016.3.31.까지 구청에 제출	시정
	-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구청제출 미이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및 보건복지부 『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』 p22에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를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미이행	- 시설 운영위원회 매분기 정기회의 회의록을 구청에 제출	시정
	- 시설 정기 안전점검결과 구청제출 미이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및 보건복지부 『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』 p139에 시설장은 매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미이행	- 매분기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구청에 제출	시정

□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 지적 및 처분사항

시설명	지 적 사 항	조치요구사항	처분
정립회관	- 정립회관 체육관 지붕 트러스(철골) 변형 정립회관 체육관 3층 농구장의 지붕 트러스(철골) 구조변형에 따른 안전위험이 있음	- 2016년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	시정
광진장애인 보호작업장	-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필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	- 2016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	시정
군자작은 예수의집	- 건물 담장 균열 심함 군자작은예수의집 건물의 담장에 균열이 심하여 안전위험이 있음	- 2016년 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	시정
중곡작은 예수의집	-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과 화재 외의 손해배상책임보험 2가지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	-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(2015년 12월)	시정

V

조치사항

- 정립전자의 시설장 등 개인 횡령혐의 건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**서울시와 협의하여 행정처분**을 할 계획임
-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조회 미이행 및 운영위원 시설 임의위촉 등 **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12월 20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**하도록 시정지시
- 지적사항 중 예산서 수립시 세입처리 부적정 및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미운영 등 **이미 제출시기가 지난 사항은 2016년부터 적기에 제출**하도록 시정지시
- 공통 지적사항인 세입·세출 결산서 지연 제출과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정기 안전점검결과 미제출에 대하여는 **2016년부터 적기에 제출**하도록 시정지시
-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지적사항은 각 시설별 **2016년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정비**하겠음